

영남에너지서비스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1/10

윤리규정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작성자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0	1999.08.30		신 설
1	2004.12.15		SK-Enron 통일안 반영
2	2007.10.26		문서형식변경(내용변경 없음)
3	2009.06.22		SK E&S 통일안 반영
4	2011.09.28		SK E&S 통일안 반영(외부인 포상제도 신설)
5	2015.03.04		SK E&S 통일 개정안 반영
6	2023.09.05		SK E&S 개정안 반영 부분개정
7			
8			
9			
10			
11			
12			
13			
14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2/10

서 문

영남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 구성원에 대하여 제반 경영활동상의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구성원과의 관계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이며,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사업파트너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예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을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1-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윤리규정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1) 합법성: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2) 투명성: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이지	3/10

3) 합리성: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1-2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1 거래당사자

사업파트너,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또는 회사의 경영 활동과 지속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2 사업파트너

사업파트너는 회사에 대하여 자사 혹은 본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을 알선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 등을 통해 협업을 하거나 사업관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2-3 공무원 등

-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정부(한국 또는 외국 정부를 포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의 입법, 행정,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외국정부포함)의 공공기능수행자
 -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
 -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정부가 주요사업의 결정 또는 임원의 임명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구성원
- 3)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각급 학교(국·공립 및 사립불문)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 선거의 후보자
- 4)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5) 1), 2), 3), 4)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및 정규직, 계약/파견직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조직의 리더는 본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4조 (회사의 신뢰와 명성보호)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4/10

구성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도덕적 기준, 국내외 법규 및 회사의 방침, 사규를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고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정보, 시설, 장비, 사무용품,公款, 예산 등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5-1 회사의 자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 정보가 타인에 의해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 등에서 대화, 토의 등을 하지 아니한다.
- 5-3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5-4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른다.
- 5-5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거나 그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성원이 재직기간 동안 점유한 정보자산 및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그 활용실태를 수시로 조사,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회사와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 6-1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구성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나 행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상충이 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가족, 친인척 등 제 3 자 또는 이들과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를 통하여 회사 또는 사업파트너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동산, 물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 2) 구성원이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6-3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회사 및 거래당사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
- 6-4 구성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해상충이 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
 - 1)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는 행위
 -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관련 주식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7조 (대공중 및 구성원상호간의 진실과 공정의 유지)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이지	5/10

- 7-1 구성원은 고객, 경쟁업체, 사업파트너, 언론기관 등 대공중과의 관계에서 항상 공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고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2 구성원은 상호 존경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나이·성별·학력·출신지역·혼인·인종·국적·종교·장애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7-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4 회사의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선물, 금품,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경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8조 (거래처와의 금품수수 금지)

- 8-1 구성원은 회사의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선물, 향응, 서비스의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또한 구성원 및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대리인, 중개인 등은 거래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선물, 향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과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 8-2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반송이 가능한 경우는 즉시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8-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수수된 선물 등을 사회공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회공헌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8-4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파트너와 단독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근무 충실 의무)

구성원은 회사를 위해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활동이 업무시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0조 (고객 만족)

회사 및 구성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객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회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Benchmarking 하며, 또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상품의 품질과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6/10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제11조 (고객정보 보호)

회사 및 구성원은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

제12조 (성장기회 제공)

- 12-1 회사는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 12-2 회사는 구성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 (공정한 평가보상)

회사는 구성원에 대하여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 5 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4조 (주주가치 제고)

- 14-1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모든 구성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 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14-2 모든 구성원은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구성원간 또는 주주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모든 주주는 그 소유 주식수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원칙 준수)

- 15-1 회사는 회사의 모든 거래와 자금의 집행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회사 자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산과 기록된 자산을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적법하게 시정할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이지	7/10

수 있는 회계체계를 수립·운영한다.

- 15-2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모든 거래를 회계장부에 정확하고 정당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15-3 구성원은 회사의 회계정책과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을 위반한 경우 즉시 직속상사에게 보고한다.

제 6 장 사업파트너에 대한 책임

제16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 16-1 구성원은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시장구성원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법률적·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행한다.
- 16-2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의 예는 아래와 같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관계를 원하는 당사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 2)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4)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5) 거래상대방 또는 경쟁사업자의 정보·기술을 부당하게 획득하지 아니하며, 정당하게 획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6)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지 아니하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 7) 회사는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합의·계약 등 이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정하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담합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합 등에 가입하거나 이러한 단체를 결성하지 아니한다.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이지	8/10

제1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 17-1 회사, 구성원은 공무원 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2 단,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허용 한도내 비용집행에 관하여는 비용발생 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 7 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18조 (사회공헌 활동)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예산 범위 및 경영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회사는 각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구성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안전/환경 보호)

회사와 구성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지며, 사고방지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채택하여 사고로부터 구성원 및 고객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제20조 (법률 준수)

- 20-1 회사는 환경관련 법률, 가스관련 법률, 증권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뇌물관련 법률(미국부패방지법과 OECD 뇌물방지협약을 포함함)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한다.
- 20-2 구성원은 자신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인식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회사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법률전문가 (또는 내부법률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외부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법률전문가는 구성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슈와 관련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률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9/10

제 8 장 규정운영

제21조 (규정운영의 책임)

- 21-1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본 규정의 운영책임자(“규정운영책임자”)로서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문에 응하고, 구성원의 규정 준수를 지도·교육·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21-2 회사의 구성원은 년 1 회 이상 본 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운영책임자는 구성원들이 본 규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정위반의 보고의무)

- 22-1 본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은 그 위반사실을 직속상사 또는 규정운영책임자에게 스스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타구성원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구성원도 그 사실을 회사의 규정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22-2 윤리규정을 위배한 또는 가능성이 있는 거래 및 행위여부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구성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 규정 위배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보고/상담 Channel의 운영)

규정운영책임자는 제 22 조의 규정위반의 보고 및 본 조의 규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의 인트라넷 등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의 제출)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준수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상 및 징계)

- 25-1 회사는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구성원을 포상할 수 있다.
- 25-2 본 규정의 신고대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의 명예와 사익을 훼손한 구성원을 징계할 수 있다.
- 25-3 포상 및 징계절차는 회사의 인력관리규정을 따른다.

영남에너지서비스 	경 영 일 반	분류번호	PHAD-0100
		개정일자	2023.09.05
	윤리규정	개정번호	6
		페 이 지	10/10

제26조 (윤리규정 실천지침의 운영)

규정운영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운영한다. 【끝】